

[계약자교부용]

이행(계약)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

(고객 교부용 청약서 포함 - 인터넷 발급용)

증권번호 제 100-000-2017 0444 2801 호

보험계약자	313-88-00108 (주)와이지푸즈 노희영	피보험자	201-82-08464 (재)서울디자인재단DDP
보험가입금액	金 四阡五百六拾萬 원整	보험료	₩45,600,000- ₩2,340,030-
보험기간	2017년 10월 19일부터 2022년 04월 09일까지 (1,634 일간)		
보증내용	계약보증금		
특별약관	1. 보험금지금특별약관 2.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보통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DDP 살림터 문화콘텐츠 위탁운영관리 계약기간 2017년 12월 22일부터 2022년 03월 09일까지 계약체결일자 2017년10월19일 계약금액 단가계약 보증금율		
총영수보험료	₩2,340,030-	제3자납부액	
영수보험료	₩2,340,030-	제3자보험료	주민(사업자)번호: 성명(성호):
증권발급부서	마포지점 (02-363-0021) 윤다슬	* 보험증권사서함을 이용하시면 고객이 SGI서울보증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보험증권을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보험대리점명	가교웰컴 (02-364-4872) 최선미	* 사서함번호 : 2017-03095106	
회사사업자번호	120-81-13002		

알아두셔야 할 사항

<p>[계약후 알릴의무] ①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변경 3. 주계약 또는 법령상 의무의 금액, 기간 등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변경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③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 또는 법령상의 의무를 변경시킴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④보험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응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p>	<p>[소멸시효] 보험료 환급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보험료의 환급] 보험사고 발생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회사의 책임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료 환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환급보험료는 기납부한 보험료에서 경과보험료(최저보험료가 경과보험료보다 많을 때에는 최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이 상품의 최저보험료는 [15,000원]입니다. [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분쟁의 조정] 보험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p>
--	--

<p>*법인세법 제1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에 의거,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보험료 영수증을 세법상 지출증빙 서류로 사용가능합니다.</p> <p>*보험료 입금계좌 안내 회사의 보험계약 최종승낙 후, 고객님께 부여해 드린 아래의 계좌로 보험료를 입금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증권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보험가입건은 SGI서울보증 홈페이지에서 부여된 별도의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 56100565115838 예금주: 서울보증보험(주), 예금은행 : 신한은행</p>	<p>면세업</p>
---	-------------------

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SGI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 중로구 김상옥로 29(연지동, 보증보험빌딩)

대표이사 **김상혁**

SGI was rated "A+(stable)" by S&P Global Ratings

"AA (Stable)" Fitch Ratings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산림통상자원부
(사)한국서비스진흥협회

핵심설명서 이 설명서는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하여 **보험상품의 핵심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요약·발췌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보험약관의 적용을 받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회사'라 함은 서울보증보험(주)을 의미합니다.**

상품설명서

보증보험계약 중요내용

상 품 명	이행(계약)보증보험		
계 약 자	(주)와이지푸즈	피 보 험 자	(재)서울디자인재단DDP
보 험 가 입 금 액	₩45,600,000	보 험 료	₩2,340,030
보 험 기 간	2017.10.19 ~ 2022.04.09	분 납 기 간	해당사항 없음
보 증 내 용	계약보증금		
특 별 약 관	<input type="checkbox"/> 보험금지급특별약관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모 집 자	서울보증보험(주) 마포지점 가교웰컴대리점 최선미 (02-364-4872)		

※ 모집자의 업무범위

- 보험계약체결의 당사자는 회사와 보험계약자입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을 대리할 수 없으며 다만,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회사는 서면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사항을 수령하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계약전 알릴사항을 고지한 경우에는 고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 회사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로부터 직접 보험료를 납입받는 것이 원칙이며, 보험계약자가 불가피하게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하여야 합니다.

보험약관 및 약정서 등 중요내용

1.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

가.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 철회시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전문보험계약자'이거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인 경우, 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라 함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과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업법」 제2조 제1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보증보험계약의 취소·해지

(1)보험계약자는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기명날인 또는 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피보험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2)회사는 계약전 알릴의무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고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을 경우 또는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보험계약자의 변경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행위에 따라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전·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청약서를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보험계약 체결후 '청약서 기재사항' 또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주계약 또는 법령상 의무를 변경시킴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계약의 성립 및 보상범위 등

가. 계약의 성립 · 승낙절차

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심사를 통해 승낙 여부를 결정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만일 회사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나. 계약의 변경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이나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계약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동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승낙의 의미로 보험계약 변경 후 보험증권을 재교부하여 드립니다.

다. 보상하는 손해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증받은 '계약상 채무' 또는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나 전쟁·내란·홍수 등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생긴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마. 보험금 지급 및 손실보상

회사는 보험사고가 접수되면 보상심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구상권 또는 대위권에 따라 지급보험금과 지연손해금, 법적절차비용 등을 포함한 금원을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바. 보험료 환급

보험사고 발생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회사의 책임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보험료(최저보험료가 경과 보험료보다 클 때에는 최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사.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또는 보험료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아. 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자. 사전구상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회사의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 사전에 약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보물을 환가하거나, 가압류 등 채권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가. 예금자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나. 보험사기에 관한 사항

보험사기(주계약 또는 보험증권 위·변조, 허위사고 등)는 형법상 금지된 범죄입니다.

다. 주요민원사항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민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1. 보험료 환급 청구 관련(1)]

<사례> 발주자 B와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수급자 A는 공사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상품(보험기간 1년)에 가입하며 향후 보험료 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자로부터 이행완료 확인이 있어야 함을 설명하였으나, 이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공사계약이 6개월만에 해지되자 이를 이유로 회사에 보험료 환급을 청구하였는데, 회사는 공사계약의 이행완료 내지는 보험사고 미발생에 대한 피보험자 B로부터의 확인이 없음을 이유로 보험료 환급불가를 통지하였고, 이에 보험계약자 A가 민원을 제기함 <유의(참고)사항> 만일 피보험자 B로부터의 이행완료 확인(증빙서류)이 없다면, 향후 피보험자 B가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 A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변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되므로, 보험계약자 A는 이를 사전에 방지하여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보험료 환급청구시 공사계약의 이행을 완료된 사실에 대한 피보험자 B의 확인을 받아야 함

[유형2. 보험료 환급 청구 관련(2)]

<사례> B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보험계약자 A는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담보를 위한 상품(보험기간 2년)에 가입하였으나, 이후 1년 만에 퇴직함을 이유로 잔여 보험기간에 상당한 보험료의 환급을 청구하였는데, 회사가 환급사유관련 확인서(퇴직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청하자 민원을 제기함

<유의(참고)사항> 피고용인의 배임행위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고용주의 손해를 담보하는 상품의 경우,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보험계약의 효력'도 유지되어야 하므로, 중도퇴직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 B회사로부터 환급사유(퇴직 등)를 확인받아 동 증서를 제출하거나, 4대 보험 관련 자격상실일을 확인(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이용)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유형3. 보험금지급 안내 누락 및 지연 불만 관련]

<사례> 피보험자 B의 보험금 청구에 따라, 회사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보험계약자 A의 주소(A가 회사에 고지한 주소)로 '사실관계확인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보험계약자 A로부터 아무런 이의를 받지 못하였고, 보상심사결과 보험계약자 A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음. 이후 보험계약자 A는 본인에게 별도 고지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함

<유의(참고)사항> 회사는 보험금청구 접수시, 보험계약자에게 등기우편 등으로 관련사실을 안내하고 있는데, 만일 보험계약 체결 이후 변경된 연락처(전화번호 및 주소 등)를 보험계약자가 회사에 알려주지 않았다면, 회사는 기존 연락처로 관련사실을 안내할 수밖에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는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즉시 회사에 유선 등으로 통지하여 보험금청구와 같은 중요한 사실을 적시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유형4. 담보물 반환 관련]

<사례> 보험계약자 A는 상품에 가입하며 담보물로 정기에금을 제공하였고 이후 '보험기간'이 종료되자 등 담보물의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회사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미경과되었음을 이유로 반환을 거절하였고, 이에 보험계약자 A가 즉시 담보물을 반환받지 못함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함

<유의(참고)사항>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이 소멸되거나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보험금청구사유가 없음을 확인받지 않는 한, 회사는 원칙적으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담보물을 반환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 A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전에 담보물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보험금청구사유가 없음에 대한 피보험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유형5. 법적조치 관련 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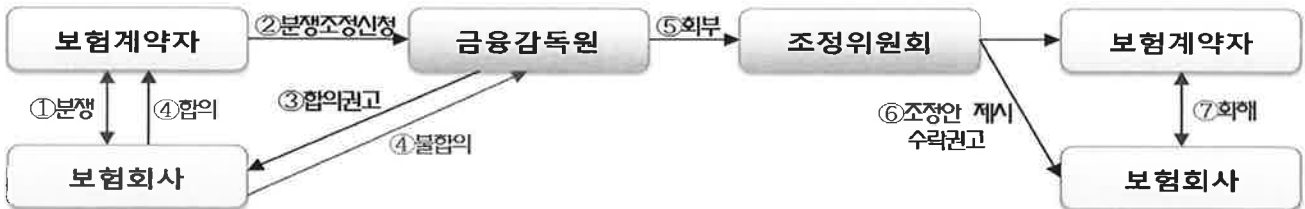
<사례> 용역계약상 채권자(피보험자)인 B는 채무자(보험계약자)인 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회사는 보험금 지급 전후에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가압류·압류 등 법적조치를 하였는바, 보험계약자 A가 회사의 구상절차 진행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함

<유의(참고)사항> 회사는 구상권 보전을 목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사전적으로 보전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 후에는 해당 보험금에 회사가 정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구상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함

라. 분쟁조정절차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 모집자(연락처 :02-364-4872)와 우리회사(연락처 : 1670-7000)로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마.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관한 사항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의 보험, 예금, 대출 등 금융거래계좌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수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고자 금융감독원(금융원 통합콜센터 1332)에서 조회를 원하는 상속인 등에게 금융계좌 보유 유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 : 사망사실(사망일자 포함)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상속인 신분증

※피보험자 본인이 사망하지 않은 경우라도 피보험자가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거나, 피보험자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상속인 신청서 필요서류와 법원판결문(원본), 등기사항증명서(후견인 및 대리권 범위 확인)

바. 추가보험료 납입을 통한 청약안내

인수부점의 심사를 통해 산출된 보험계약자의 자기신용을 초과한 보험청약으로 신용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행(계약, 차액, 선금급, 하자, 상품판매대금, 지급) 및 인허가 중 선택요율 적용이 가능한 보험계약에 한하여 보험계약자의 선택으로 추가보험료 납부를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 보험기간 만기안내 등

보험기간 만기안내 및 안내장은 청약서에 기재하신 주소로 송부되오니,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아. 개인(신용)정보의 보호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안전하게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합니다.

4. 특별약관

별지참조

보험약관 주요내용

※ 세부사항은 보험약관의 적용을 받으므로, 보험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상하는 손해]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증받은 '계약상 채무' 또는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나 전쟁·내란·홍수 등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생긴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계약자의 변경
 3. 피보험자의 변경
 4.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계약 또는 법령상 의무의 금액, 기간 등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변경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 또는 법령상의 의무를 변경시킴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意的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손해의 방지와 경감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그렇지 않았다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손해를 보상액에서 뺍니다.

③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회사가 보상하여 드립니다.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또는 보험료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준거법]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보상서비스

-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①홈페이지(www.sgic.co.kr) 또는 ②전국 영업지점이나 보상심사 담당부서를 통해 보험금 청구 이후 필요서류를 제출(방문 또는 우편접수가능)하시면 보상심사가 진행됩니다.

보상심사 담당부서 (담당부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강서보상지원단	02-3671-8139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심사를 위해 심사자료 추가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인터넷, 우편, 방문)	▶ 접수 & 보상담당자 지정	▶ 보상심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

- 'SMS' · 'e-Mail' 발송에 동의하시면, 담당부서 및 연락처, 보상심사 진행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부터 '자료제출', '담당부서 조회' 및 '진행사항 확인'까지 인터넷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경로 : 홈페이지(www.sgic.co.kr) > 보상서비스 > 보상안내 / 보험금 청구 / 보상자료 제출